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김희수 의원 외 22명)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5
----------	-----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김희수, 박용선, 조현일
최병준, 김지식, 한창화
이수경, 최태림, 홍진규
도기욱, 김봉교, 안희영
남천희, 김수문, 김창규
장영석, 이동호, 황이주
박문하, 배영애, 배진석
이태식, 나기보 의원
(23명)

찬 성 자 : 이정호 의원(1명)

1. 개정이유

-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법을 반영하고, 우리교육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통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한 학생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제5조)

나. 인성교육 평가 심의를 위한 협의회의 명시화(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6.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붙임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없음

7. 참고사항 : 붙임참조

- 발의자 및 찬성자 서명부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

제6조제1항제3호 중 “협의회”를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인성교육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 ----- ----- ----- -----.
<신 설>	1.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지역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u>협의회</u> 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u>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u> 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의 건 서

행정과

주요내용 (조항)	검 토 의 건
총평	-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인성교육의 틀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인성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됨

행정과

주요내용 (조항)	검 토 의 건
교육규제에 대한 검토의견	-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함 -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 7급	전민오
입안주무부서	초등과	통보(조치)일	2017. 9. 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특혜발생 및 부패 유발요인이 있는 조항		평가항목별,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결과 ‘원안동의’ 의결함.	해당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 검토내용

검토의견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동의” ○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법을 반영하고, 교육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통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한 학생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임.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고, 인성교육 평가 심의를 위한 협의회를 명시화하는 내용을 일부개정함. ☞ 일부개정조례안 중 특혜발생 및 부패 유발요인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북교육042			
정 책 명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부서명	초등과		
	담당자명	이현성	전화번호	054-805-3309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8월 3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초등교육과)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 인성교육 평가 심의를 위한 협의회의 명시화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8월 31일 경상북도교육청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한상진/054-805-3524) 초등과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5조제3항(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가. 제5조제3항에 의거한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은 인성교육을 위한 단위학교별 자체 운영비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도단위 재정수반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음

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에 의거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범교과학습 주제 내에 ‘인성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고 있음

다.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16-9호), 경상북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17-4호), 경상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17-3호)에 의거 학교장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해 매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라. 인성교육진흥법(2015.7.21.시행)에 의거 현재 ‘2017 경북 인성교육 시행계획(2017.2.16.)’ 내에

〈중점과제4〉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 지원

〈세부실천과제2〉 지역사회 인성교육지원 강화내용속에 ‘경북장체성교육’, ‘1교 1나눔 운동’,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 등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형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은 단위학교별 인성교육 운영을 위한 자체 예산에 포함

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경상북도교육청 초등과 / 장학사 이현성 / 054-805-3309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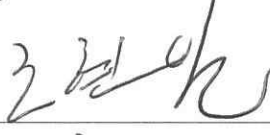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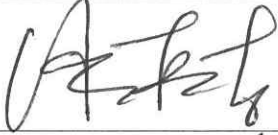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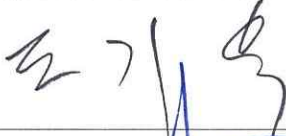
검 토 의 건 서

초등과(해당부서)

주요내용 (조항)	검 토 의 건
제5조	- 별도 의견 없음
제6조	- 별도 의견 없음
총 평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인성교육 평가 심의를 위한 협의회를 명시함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	서명 및 날인	비고
김화수		
박용선		
조현일		
최영재		
김지석		
한기하		
이두재		
최재민		
홍진규		
노기욱		
조봉오		

성명	서명 및 날인	비고
장 리 영	장리영	
남 최 희	남최희	
김 두 복	김두복	
김 창 권	김창권	
장영석	Yschang	
이응근	이응근	
황이주	황이주	
박기하	박기하	
배영애	배영애	
배진영	배진영	
이태석	이태석	
나기보	나기보	

찬성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llegible]